「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2일, 이창열 의원 발의

❍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❍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 . 제안이유

❍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신혼부부의 지원기간을 2년으로 정비(안 제6조제3호)

❍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차등 적용(안 제6조제4호)

❍ 총 지원기간을 실제 지원받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5호)

❍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개정 규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경과조치를 둠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차등 적용하고,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기간 종료 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, 저출산·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

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개정안은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자녀 수에 따라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하고,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기간 종료 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지원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,

❍ 이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고, 자녀 수가 증가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,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